

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447호 2018. 5. 3. (목)

【규 칙】

- 정선군 규칙 제1305호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.....4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규 칙

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8년 5월 3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규칙 제1305호

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

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재택당직자”라 함은 토요일, 공휴일 또는 일과 근무시간 이후 자택 등에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한 채 당직 근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5조 “(숙직자의 휴무)”를 “(당직근무자의 휴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숙직근무자”를 “당직근무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 대상자가 임신 중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또는 중증 장애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편성 제외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당직근무 제외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당직명령자는 당직근무 제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당직자가 귀가 시 다음 각 호의 비품을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.

1. 휴대전화
 2. 당직일지(사무실 비치)
 3. 부서별 전화번호
 4.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당직실 전화번호
 5. 직원 비상소집명부
- ⑤ 재택당직자는 귀가 후 다음날 08:00까지 조기 출근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택근무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언으로 일직근무자와 인계인수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 정 이 유

현재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대체휴무가 곤란하고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주 요 내 용

- 가. 재택당직에 대한 정의를 신설(안 제3조제4호)
- 나.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는 규정 신설(안 제5조)
- 다. 당직근무 편성 제외자 신설(안 제6조제7항)
- 라. 재택당직 근무규정 보완(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)